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등기번호	548023		
등록번호	110111-5480233		
상 호	밸류오션제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Value Ocean 2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 LTD.)		
	유안타제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Yuanta 1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 LTD.)	2014.10.02 변경	2014.10.02 등기
	글로벌텍스프리 주식회사 (Global Tax Free Co., Ltd.)	2017.09.08 변경	2017.09.08 등기
본 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6(을지로2가, 동양증권빌딩)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31, 9층(충무로2가, 신일빌딩)	2017.09.08 변경	2017.09.08 등기
광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다만, 폐간, 휴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global-taxfree.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지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2017.09.08 변경	2017.09.08 등기
1주의 금액	금 100 원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000 주		
	500,000,000 주	2017.09.08 변경	2017.09.08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변경 연월일 등기 연월일
발행주식의 총수	500,000 주	금 50,000,000 원	
보통주식	500,000 주		
발행주식의 총수	6,000,000 주	금 600,000,000 원	2014.11.14 변경
보통주식	6,000,000 주		2014.11.14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95,045,190 주	금 9,504,519,000 원	2017.09.08 변경
보통주식	92,938,855 주		2017.09.08 등기
제2종 전환상환우선주식	2,106,335 주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정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열람일시 : 2017년09월19일 15시30분28초

등기번호	548023
------	--------

목 적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2017.09.08	삭제	2017.09.08	등기>
1. 환급창구운영사업		<2017.09.08	추가	2017.09.08	등기>
2. 외국인 세금환급 대행과 관련된 가맹점 모집 및 관리업		<2017.09.08	추가	2017.09.08	등기>
3. 외국인 세금환급 대행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 및 공급, 임대		<2017.09.08	추가	2017.09.08	등기>
4.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2017.09.08	추가	2017.09.08	등기>
5. 내외국인 대상 여행업		<2017.09.08	추가	2017.09.08	등기>
6.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대행		<2017.09.08	추가	2017.09.08	등기>
7.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전자화폐의 이용과 관련된 대금결제 업무		<2017.09.08	추가	2017.09.08	등기>
8. 카드(전자적지급수단) 발급대행 및 결제시스템 제공		<2017.09.08	추가	2017.09.08	등기>
9. 신용카드 이외의 기타 카드발급 업무 및 대행업무		<2017.09.08	추가	2017.09.08	등기>
10. 제6호 내지 제9호에서 정하는 업무의 단말기 관련업무		<2017.09.08	추가	2017.09.08	등기>
11. 환전사업		<2017.09.08	추가	2017.09.08	등기>
12. 자동송금처리 시스템 및 서비스제공업		<2017.09.08	추가	2017.09.08	등기>
13. 다음 각 목의 전자금융업		<2017.09.08	추가	2017.09.08	등기>
가.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2017.09.08	추가	2017.09.08	등기>
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2017.09.08	추가	2017.09.08	등기>
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2017.09.08	추가	2017.09.08	등기>
14. 결제대금 예치업		<2017.09.08	추가	2017.09.08	등기>
15. 공항, 항만이용과 관련된 서비스업		<2017.09.08	추가	2017.09.08	등기>
16. 통신판매업		<2017.09.08	추가	2017.09.08	등기>
17. 전자상거래		<2017.09.08	추가	2017.09.08	등기>
18. 부가통신사업		<2017.09.08	추가	2017.09.08	등기>
19.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공급업		<2017.09.08	추가	2017.09.08	등기>
20. 온라인 광고대행업		<2017.09.08	추가	2017.09.08	등기>
21. 각 호와 관련된 무역업		<2017.09.08	추가	2017.09.08	등기>
22. 국제물류주선업		<2017.09.08	추가	2017.09.08	등기>
23. 물류창고업		<2017.09.08	추가	2017.09.08	등기>
24. 택배, 배달, 운송업		<2017.09.08	추가	2017.09.08	등기>
25. 여행알선 및 운수관계 서비스업		<2017.09.08	추가	2017.09.08	등기>
26. 의료관광업		<2017.09.08	추가	2017.09.08	등기>
27. 기업컨설팅		<2017.09.08	추가	2017.09.08	등기>
28. 쇼핑몰 운영 및 시설 관리		<2017.09.08	추가	2017.09.08	등기>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정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등기번호	548023
------	--------

29. 광고대행업	<2017.09.08 추가 2017.09.08 등기>
30. 부동산 임대 및 관리업	<2017.09.08 추가 2017.09.08 등기>
31.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2017.09.08 추가 2017.09.08 등기>

임원에 관한 사항	
사내이사 정상역 720416-***** 2017년 07월 31일 퇴임	2017년 09월 08일 등기
사내이사 김홍장 680820-***** 2017년 07월 31일 퇴임	2017년 09월 08일 등기
사외이사 김상우 731212-***** 2017년 07월 31일 퇴임	2017년 09월 08일 등기
대표이사 정상역 720416-*****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로 62, 337동 302호(잠실동, 트리자움)	2017년 09월 08일 등기
대표이사 정상역 720416-*****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135, 260동 402호(잠실동, 리센츠)	2017년 09월 08일 등기
2016년 01월 15일 주소변경	2017년 09월 08일 등기
2017년 07월 31일 퇴임	2017년 09월 08일 등기
감사 구태균 710420-***** 2017년 03월 31일 퇴임	2017년 09월 08일 등기
사내이사 강진원 720824-***** 2017년 09월 08일 취임	2017년 09월 08일 등기
대표이사 강진원 720824-*****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30길 57, 이동 3105호(도곡동, 타워팰리스아파트)	2017년 09월 08일 등기
2017년 09월 08일 취임	2017년 09월 08일 등기
사내이사 신규용 691127-***** 2017년 09월 08일 취임	2017년 09월 08일 등기
사내이사 이명용 710227-***** 2017년 09월 08일 취임	2017년 09월 08일 등기
사외이사 공영민 540202-***** 2017년 09월 08일 취임	2017년 09월 08일 등기
사외이사 황영선 630108-***** 2017년 09월 08일 취임	2017년 09월 08일 등기
감사위원 신규용 691127-***** 2017년 09월 08일 취임	2017년 09월 08일 등기
감사위원 공영민 540202-***** 2017년 09월 08일 취임	2017년 09월 08일 등기
감사위원 황영선 630108-***** 2017년 09월 08일 취임	2017년 09월 08일 등기

종류주식의 내용	
제2종 전환상환우선주식	
<의결권에 관한 사항>	
(1)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주식 일주당 보통주와 동일하게 일개의 의결권을 갖게 된다. 본건 우선주식에 불리한 주주총회 결의 등이 있는 때에는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전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식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단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후의 보통주식은 일주당 일개의 의결권을 갖게 된다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등기번호	548023
------	--------

(2) 본건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존속기간내에 보통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 다음날 자동적으로 보통주로 전환된다.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1) 본건 우선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 받는다.

(2) 주식배당의 경우,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우선주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3)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본건 우선주식의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식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본다.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 기간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 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지급일까지 연복리 15%의 이자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4)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전환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배당결의되었으나 그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동 미지급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가 당해 주식의 주주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청산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1)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주당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하여 연복리 5%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원에 대하여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2) 본건 우선주식에 대한 우선 분배를 한 후 보통주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이 본건 우선주식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함께 참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전환권에 관한 사항>

(1)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그 발행일 익일로부터 그 존속기간의 말일 전일까지 언제든지 본건 우선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의 만기일 전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건 우선주식은 존속기간의 만기일에 보통주식으로 자동전환된다

(2) 전환방법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a)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우선주식전환청구서에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날인하고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b) 전환청구를 한 경우 전환은,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전환될 본건 우선주식의 주권을 제출한 날짜의 영업시간 종료 직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c)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전환에 의하여 보통주식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b)호의 날짜를 기준으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간주된다.

(d) 회사는 본건 우선주식의 주권을 인도받은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당해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그가 부여받을 권리가 있는 수만큼의 보통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3) 전환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a) 본건 우선주식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정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등기번호	548023
------	--------

(b) 회사의 IPO 공모단가[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을 통한 상장외의 경우 합병비율 산정을 위한 주당 평가가액(합병가액)을 말하고, 이하 본호에서 같음]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투자자의 본건 우선주식의 인수단가를 하회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다음과 같이 재조정한다.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을 통한 상장외의 경우에는 본 (b)호의 내용이 본조 (3)항 (d)호 내용에 우선한다.

조정 후 우선주 1주당 전환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 /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c) 회사가 전환 전에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또는 전환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또는 전환가격)으로 조정한다.

단, 본건 우선주식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회사로부터 주주가 보유한 신주와 같은 조건 및 종류의 우선 주식으로 무상지급을 받도록 하되 아래의 수식을 따른다.

$$N_i = B_i \times \{(A_c \div B_c) - 1\}$$

(N_i: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무상지급 되는 우선주식수

B_i: 발행 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 보유 우선주식수

B_c: 발행 전 회사 발행주식총수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A_c: 발행 후 회사 발행주식총수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d) 회사가 타사와 합병 시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가액이 본건 우선주식의 인수단가 또는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인수단가 또는 전환가액이 평가가액에 상응하도록 전환비율을 조정한다.

(e) 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f) 회사가 전환 전에 무상감자를 할 경우에는 전환비율을 다음과 같이 재조정한다. 단, 경영과실 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다.

우선주 1주당 전환하는 보통주의 수 = 본 항 (a)호의 전환비율에 의해 전환되는 보통주의 수 * [1- 무상감자되는 주식수 / 무상감자전 회사 발행주식총수(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4)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청구기간 만료 시까지 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한다. 전환가격의 재조정으로 말미암아 유보된 수권주식이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수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권자본 증가를 위한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5)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전환권을 행사한 우선주 및 전환으로 발행된 신주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상환권에 관한 사항>

(1)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2020년 1월1일부터 회사에 대하여 본 조에 따라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회사는 상법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이후 본건 우선주식의 상환에 합법적으로 사용가능한 추가 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회

등기번호

548023

사는 동 자금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상환청구하였으나 미상환된 주식을 상환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2) 회사는 주주의 상환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상환하기로 한다.

(3) 주당 상환가액은 본건 우선주식의 인수단가와 동 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 0%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본건 우선주식 발행일부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감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4)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청구한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상환가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상환을 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상환가액에 대하여 연복리 15%의 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상환조건과 별개로 회사에 대해 본건 우선주식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제3항의 주당 상환가액은 본건 우선주식의 인수단가와 동 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18%(단, (j)호의 경우에는 연복리 20%)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본건 우선주식 발행일부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감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에서 중요 자산이라 함은 전년도 감사보고서상 자산총계의 10% 이상의 자산을 말한다.

(a) 거래완결일 이후 주주의 가장납입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주요 자산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유출시킨 경우

(b) 본건 우선주식 발행 및 인수 관련 계약에서 정한 회사의 진술과 보장이 중대한 부분에 있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c)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거래완결일 이후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등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d) 회사의 중요 자산에 대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의 신청이 있음으로 인하여 회사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e) 회사 스스로 회사에 대한 해산, 청산, 파산, 회생 등의 도산절차 또는 은행거래정지 등의 부실징후기업으로의 인정 등의 절차를 신청하거나, 제3자 신청으로 개시되어 위 해산, 청산, 파산, 회생 절차 등이 인가된 경우

(f) 회사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g) 회사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적정이 아닌,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일 경우

(h) 회사와 대주주 또는 제3자와의 분쟁 등으로 인하여 회사의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진 경우

(i)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특약사항 포함)의 중대한 사항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는 경우(본 계약에서 정한 거래완결 전 의무를 위반하였던 것이 사후적으로 발견된 경우 포함)

(j) 회사가 투자자와 협의한 시기에 IPO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IPO를 해태하는 경우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식은 보통주와 동등한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우선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기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등기번호	548023
------	--------

2017년 09월 08일 승계 2017년 09월 08일 등기

기 타 사 항

1. 명의개서대리인

~~상호 : 주식회사 국민은행~~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

~~2014년 08월 11일 설치 2014년 08월 12일 등기~~

상호: 한국예탁결제원

본점소재지: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017년 09월 08일 변경 2017년 09월 08일 등기

1. 흡수합병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31, 9층(충무로2가, 신일빌딩) 글로벌텍스프리 주식회사를 합병

2017년 09월 08일 등기

1.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

~~회사의 존속기간은 합병대상법인과 합병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최초로 주권을 모집(이하 최초 주권모집)하여 주권을 납입받은 날로부터 36개월까지로 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마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라 이 회사는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를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권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2.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권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이 회사 주권이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

2017년 09월 08일 말소 2017년 09월 08일 등기

전 환 사 채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 전환사채의 총액

금 1,500,000,000원

1. 각 전환사채의 금액

금 50,000,000원권 28매, 금 10,000,000원권 9매, 금 1,000,000원권 10매

1.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각 사채 권면금액의 100퍼센트

1.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의 조건

본 사채는 사채권자의 전환청구에 의하여 사채 권면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다음 각호의 조건에 따라 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 : 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액면가 100원)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등기번호	548023
------	--------

2) 전환비율 : 전환을 신청한 사채권면금액의 100%(2 이상의 사채권으로 전환청구 시에는 그 권면금액의 합산금액)를 전환가격으로 나는 주식수를 전환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한다. 이 때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수주 대금의 해당기간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단, 사채 권면금액의 일부에 대한 전환 청구는 할 수 없다.

3) 전환가격 : 액면가 100원을 기준으로 1주당 1,000원으로 한다.

4) 전환가격의 조정 :

(가) 사채권자의 전환청구 전에 회사가 시가(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를 말하고,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식공모를 한 경우에는 그 공모가 가액으로 하되 공모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해 조정사유 발생일 직전의 위 사채의 전환가격을 시가로 한다. 이하 같다)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행사가격 혹은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 혹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 아 래 -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청구가 이루어져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 또는 그 주식수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조정된 전환가격이 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라) 본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5) 전환청구기간 : 2014년 9월 12일부터 2019년 8월 11일까지로 한다.

6) 전환청구 절차 및 전환의 효력발생

(가) 전환청구를 받을 장소 : 회사의 본점

(나) 전환청구 절차 : 소정의 전환청구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사채권과 함께 회사의 본점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다) 전환의 효력발생시기

i. 전환청구를 하는 자는 회사의 본점에 전환청구서를 제출하고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권을 제출한 때에 전환의 효력이 발생하여 주주가 된다.

ii. 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의 최초 이익배당: 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등기번호	548023
------	--------

전환청구한 날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7) 기타사항
(가) 미발행 주식수의 보유 : 사채권자가 전환청구할 수 있는 기간까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대하여 전환으로 인하여 증가가능한 주식수를 미발행주식수로 보유하여야 한다.
(나) 전환청구에 의한 증자등기 : 전환청구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한다.
(다) 전환주권의 교부 : 전환청구로 발행되는 주권은 전환청구가 있는 월의 익월 20일부터 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에서 교부한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기명식 보통주식

1. 전환청구기간
2014년 9월 12일부터 2019년 8월 11일까지
2014년 08월 12일 발행 2014년 08월 12일 등기

주식매수선택권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1)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 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함)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1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99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교부할 신주 또는 자기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할 수도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7년 범위 내에서 별도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에 행사할 수 있다.

1.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정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등기번호	548023
------	--------

1) 당해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후 2년 이내에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혀 해임되거나 징계 해직된 경우 3) 기타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2017년 09월 08일 설정 2017년 09월 08일 등기
--

회사성립연월일	2014년 07월 31일
---------	---------------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설립	2014년 07월 31일 등기
-------------------------	------------------

수수료 700원 영수함 --- 이 하 여 백 ---
 관할등기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 발행등기소 :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